



202.11 호

행정 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내용의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감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 본인은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4월 26일 토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장애인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의 커미셔너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가능한 환경 승인을 받은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범위까지 정신 보건법(Mental Hygiene Law) 제16.03조 및 16.05조,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4장 619편.
- 정신 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프로그램 및 시설이 인력 부족을 겪는 경우, 고용된 직접 지원 전문가를 위한 약식 교육 및/또는 재인증 마감일 연장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4장의 633.16편
-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 기간 및 금액을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이 지정한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정과 규율에 한하여, 사회보장서비스법 제131-u항 및 제459(b)항, NYCRR의 18장 408.6편, 408.7편, 408.8편.
-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공중 보건 비상 기간 중 특정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 임시 제조 정책(2002년 3월)에 따라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등록 거주 약국 및 등록 거주자 아웃소싱 시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Education Law) 제6808 (1)조 및 기타 관련 규정.
- 약학 테크니션과 약사가 개인 보건 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에 대한 적절한 보안을 보장하는 한 자택을 포함한 대체 장소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교육법 제6802조, 제6808조, 제6841조 및 NYCRR 8장 29.7 (10)편 및 63.6편.
- 뉴욕주 교육부(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에 등록되었으며 자격을 갖춘 실무 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등록 전문 변호사 및 면허 실무 변호사 졸업생이 등록 전문 간호사의 감독 하에 졸업 180일 직후 병원이나 양로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교육법 제690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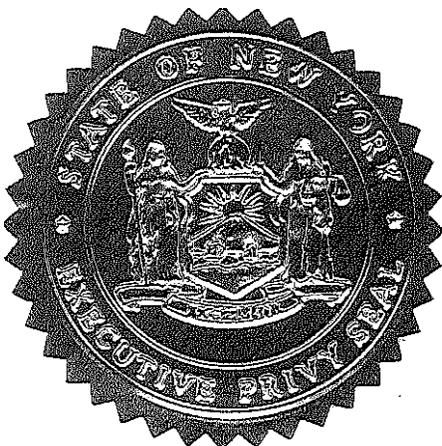
부속조항 5 및 관련 규정

- 뉴욕 주립 대학교(SUNY)가 임대 및 소유하며 SUNY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뉴욕주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 인력이 공무원법(Public Office Law) 제17조의 조항으로 인해 주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까지 공무원법 제17조 부속조항 11 및 기타 연관 규정.
- SUNY가 이 항목에 따라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 병원(SUNY Upstate Hospital),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톤브룩 대학 병원(SUNY Stony Brook University Hospital),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 대학 병원(University Hospital SUNY Downstate)에 대해 보상 및 미보상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주정부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지정되도록 하는 범위까지 공무원법 제17조 세부조항 1 목 및 기타 연관 규정.
- 뉴욕주 커뮤니티 칼리지에 주민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3자 요구 사항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비상 재난 기간 동안 모든 카운티의 주민 인증 서류의 전자메일과 우편 신청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교육법 제6305조 부속조항 (3) 및 NYCRR 8장 제602.12조 부속조항 (c)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주정부 또는 지방 법, 규정, 및 규제
- 기관예산청(Authorities Budget Office) 청장으로 하여금 주정부 또는 지방 기관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주정부의 비상 사태 선포를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기한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공 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2800(1)(a)조 및 (2)(a)조, 제2801(1)조 및 (2)조, 제2802(1)조 및 (2)조, 제2824(2)조.
- 공공 단체가 입찰을 기록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하여 대중에게 이러한 공개 입찰을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 비공개 입찰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방자치단체법(General Municipal Law) 제103(2)조, 뉴욕주 금융법(State Finance Law) 제144(1)조, 교육법 제376(8)(a)조, 공공 기관법 제359(1)조.
-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기업이 등록 만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본 행정명령의 만료일에 맞추어 면허 갱신 기간을 30일 갱신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일반 기업법(General Business Law)
 - 제6-D조, 제7조, 제7-A조, 제8-B조, 제8-C조, 제27조, 제28조, 제35-B조, 제35-C조, 제37-A조, 제39-E조, 제39-G조, 제41조, 399-pp편.
 - 행정명령 만료일에 따라 면허를 30일까지 갱신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필요한 경우 뉴욕 행정부법(New York Executive Law) 제6-F조, 제6-H조, 제 130-131조의 개정.
 - 행정명령 만료일에 따라 면허를 30일까지 갱신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필요한 경우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 제12-A조, 제12-B조, 제12-C조의 개정.
 - 행정명령 만료일에 따라 면허를 30일까지 갱신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필요한 경우 뉴욕 예술문화법(New York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제25조의 개정.
- 이번 코로나19 비상 사태 중 코스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현재 주무부에 등록된 제조업자, 소매업자, 설치업자, 기술자가 기존의 인증을 갱신하는 데 필요한 교육 의무 조건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9장 제1210.13조.
- 도시 개발 기업이 대중에게 제안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대안적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법의 고지 의무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고지하는 한, 제안 프로젝트의 시행에 필요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범위까지 도시 개발 기업법(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Act) 16장.
- 제94조 (10) (a-c)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특정 훈련에 대하여 30일 내에 훈련을 완수할 경우 기한 미준수가 행정부법 위반을 구상하지 않는 범위까지 행정부법 제94조.
- 이러한 대응의 일정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는 한 공동 운영/콘도미니엄 제공 계획의 30일 안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일반 기업법 제352-e(2)조.
- 애디론덱 공원청(Adirondack Park Agency)이 변경 의무에 대응, 개정을 승인, 기타 요청을 승인하는 과정에 *대하여* 법이 명시한 기한 또는 규정 기한을 일시 중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까지 행정부법 제806조, 제808조, 제809조, 제814조 및 환경보존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제24-0801조, 기타 연관 규정.
- 미국의 모든 주 또는 캐나다의 모든 지방이나 영토의 정당한 일원이며 면허를 받은 조산사가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 없이 뉴욕주에서 활동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제6951조, 제6952조, 제6953조, 제6955조.
- 이 행정명령의 기간에 맞추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발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차량에 대하여 마지막 프로시딩 육 개월 이내 기간 동안 차량 검사 의무를 30일 연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통법(Transportation Law) 제140(3)조.

- 비상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 해당 조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에서 퇴직 및 사회보장법(Retirement and Social Security Law) 제212조.
- 차량을 검수 인증 만료일 이후 이 명령 일자까지 유효하여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으나 이후 만료되어 연간 안전 검사 및 최소 2년 주기의 배출 검수를 요구하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제301조 부속조항 (a).
- 장례식을 승인하거나 수락하는 문서 및 양식을 실행할 때 손으로 부착 한 서명 대신 사람이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뉴욕주 기술법(State Technology Law) 307(1)조.

또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가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폐쇄 명령이 재검토될 2020년 4월 15일까지 모든 학교가 폐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학교 폐쇄와 관련된 행정명령 202.4호에 포함된 지시는 이에 개정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는 여기에 명시된 기간 이상으로 폐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사태의 결과로 인한 180일 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축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필수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대체 교육 옵션, 식사 제공, 보육에 대한 계획을 지속하고 남아 있는 방학 및 폭설 휴가를 먼저 사용해야만 합니다.
- 예방 목적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 배분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 202.10호에 포함된 지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 처방의 경우, 미국법(United States Code, U.S.C.) 42장 1396r-8(g)(1)(B)(i)에 명시된 보전에 포함되거나 승인된 하나 이상의 인용에 의해 뒷받침되는 표시에 대해 서술된 경우, 입원 및 위급한 환경의 환자를 위한 경우, 숙련 간호 시설의 급박한 거주자의 경우, 또는 기관 검토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승인한 연구의 일환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약사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약을 처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처방전에 처방전이 발급된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 운영 시설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한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기간 동안 이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인원 이상의 공간 점유 및 시설 운영은 법 위반으로 간주되지만 특히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시설 또는 공간이 위치한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동일 규범 또는 기타 지역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간 또는 시설이 위치한 관할권 내에서 법률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주, 군 또는 지방 경찰관은 해당 공간 또는 시설에서 인원을 빼낼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시설 또는 공간이 위치한 관할권 내에서 동일한 법 또는 기타 지역 건축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주, 카운티 또는 현지 법령 집행 공무원 또는 소방관은 위반 통지(Notice of Violation), 즉각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위반의 시정 명령(Order to Remedy), 및/또는 모든 시설 및 공간의 소유자, 운영자, 점유자에게 점유 금지 명령(Do Not Occupy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그러한 점유 관련 지침 또는 시설 운영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기타 및/또는 추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 단위 또는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의 예방 및 감염 관리와 관련된 모든 지침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및 모든 지역 보건위원회, 지역 보건부 또는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주의 기타 정치적 세분화 부서에서 발행한 지침을 대체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